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 제공·판매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근거 마련〉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22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I. 개요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2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 제공·판매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비용, 요금제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7조의2(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 제공·판매 차별금지)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공·판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이동통신사업자등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공·판매하는 경우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점자로 된 설명 서류의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비용, 요금제, 서비스의 조건 등에 대하여</u>

	<u>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u> <u>내용 및 장애인에게 명확하게 고</u> <u>지하여야 할 내용 등 필요한 사</u> <u>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2. 검토의견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폰 개통 관련 피해에 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¹⁾

-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²⁾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장애인의 휴대폰 거래 피해 규모는 총 203건, 6억 8천만원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³⁾

- 피해를 입은 후, 이를 구제받으려고 하여도, 계약 과정에서 형식적인 동의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라 판매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을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⁴⁾

□ 개정안은 휴대폰 가입 계약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 받

1) 하민지, 발달장애인은 보호자 없으면 스마트폰 개통 불가?,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33>(2021년9월30일).

고병찬, 발달장애인 휴대폰 사기 피해 지난해 2억...“통신사 함께 예방”,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314.html(2022년6월24일).

이슬기,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0>(2023년3월3일).

2)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2006년에 출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장애인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 소비제품 접근성 개선활동, 장애인소비제품 조사·연구 사업, 장애인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음(<http://www.kdca.or.kr>)

3) 보건복지부 제출

4) 김남희, 「발달장애인 휴대폰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 2022.11.

생을 방지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판매점들로 하여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공·판매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점자 설명 서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여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차별금지라는 취지 하에 ‘제한, 배제, 분리, 거부’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으로 취지가 흐려지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 사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장애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형태·종류를 정하고, 이를 제작·배포하여 실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활용하기까지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안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준비 및 점자자료 등의 제작 형태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해 시행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수정수용)

- 스마트폰 거래에서 장애인들의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 필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명확한 고지의무를 민간 부분으로 확산하는 것에 공감
-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등이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로 된 설명자료 등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와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연구 및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법령의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

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신중검토)

- 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임 입법의 한계와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 법률상 정당한 편의의 예시 또한 설명 서류의 제공 ‘등’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추상적인 표현의 구체적 개념은 정당한 편의의 제공 및 장애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하위 법령에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음.
- 이동통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로 하여금 과도한 부

답을 지우는 과도한 규제이며,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해당 법령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동통신서비스는 이미 타 법령(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 중복규제를 통한 처벌까지 부과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됨.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경우 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용자 보호를 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한 지고 있음.

- 통신사업자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차법이 해당 사업 분야를 지목하여 개정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9